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권한위임 사무중 공업과 소관 제7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4. 민간위탁 사무중 공업과 소관 제5호를 삭제한다.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공 업 과	7	○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변경)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권한 가.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 허가 나. 시공자에 관한 시정명령등 다.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 제3조 동법 제15조의4 동법 제34조
	9	○ 도시가스시공자 및 특정사스사용시 설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4항
	10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 사용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 기한 연기 및 필요한 조치명령 라.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마. 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선임· 해임, 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5항 동법 제58조 제6항 동법 제59조 제4항, 제5항 동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100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